

영국 유전자 은행 DNA감식

영국의 치안당국은 '95년말부터 6월초까지 1주동안 5천여명의 경찰을 투입, 모두 1천8백곳의 주소지를 급습하는 대대적인 범죄소탕 작전을 벌였다.

소득은 꽤 컸다. 경찰은 범죄혐의자 1천8백명을 체포했고, 흠친 보석과 그림, 위조지폐, 마약, 무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 중엔 침(타액)도 포함됐다.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일정 용기에 소량의 침을 뱉어 「기증」해야만 했는데, 이는 치안행정 역사상 가장 첨단 무기인 「유전자 은행」의 자료용이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요즘 DNA분석을 토대로 한 유전자 자료의 [은행보관]이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그동안 강력범죄 용의자에 제한됐던 DNA 증거확보를 경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용의자에게 확대

시키는 새로운 법이 지난 (95년 5월) 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영국정부는 이법에 의해 금세기 말까지 5백만명 분의 유전자 자료를 보관함으로써 영국이 세계 최대의 유전자은행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1. DNA감식으로 거의 완벽한 범죄자 식별

경찰은 혈액 채취때는 여전히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침을 채취하거나 머리카락을 모근째 뽑는 일 등은 자유자재로 행할 수 있다. DNA감식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신체 유류물을 통해 99%이상의 정확도로 범죄자를 식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성폭행이나 살인사건 등의 해결에는 거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영국 남부의 웨스트 서섹스 지방경찰청장 그래함 힐은 「DNA 감식은 법의학사상 지문이 생겨난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

이라며 「우리는 DNA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모든 범죄사건에서 용의자를 색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유전자은행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시민단체의 입장은 정반대다. 진보성향의 인권단체 「리버티」의 아티야 록우드 대변인은 「당국이 유전자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히 무죄가 입증된 사람의 DNA 자료는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관련 조항이 너무 광범위해서 앞으로는 교통위반시에도 DNA 샘플의 채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그는 우려한다.

웨일즈 카디프에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카디프의 경찰은 현재 소녀 강간살해사건을 수사중인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를 감행, 말썽을 빚고 있다. 카디프의 한 주택단지에 살던 15세의 클래어 후드양은 최근 집근처 숲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용의자 정액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클래어양이 거주하던 주택단지의 1만1천명의 주민중 한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들을 중심으로 혈액채취를 시작했다. 수사 총책임

자인 스튜어트 르워스는 혈액채취는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경찰의 심문을 받게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2. 급증하는 범죄발생 억제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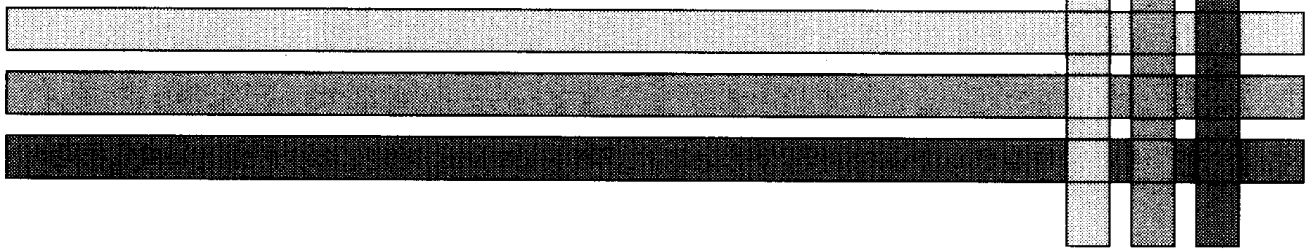
유전자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법의학연구소의 데이비드 웨렛 소장은 DNA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감을 표시한다.

새법은 석방된 범법자나 혐의가 풀린 사람들의 DNA자료가 유전자은행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DNA 분석가들이 유전자감식을 통해 용의자를 식별해냈을 경우도 경찰은 같은 샘플에 대해 또다른 연구소에서 재감식을 하도록 돼있다.

적절한 절차만 밟는다면 DNA 감식은 놀랄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 웨렛은 유전자 형태가 중복되는 경우는 3천만명중 1명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경찰은 유전자 은행이 여러 미제사건을 해결함은 물론, 급증하는 영국의 범죄발생율을 떨어뜨리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치안연구소식

연 구 소 동 정
치 안 시 책 동 향
법 제 동 향



연구소 동정

□ '96사업계획 수립 추진

연구소에서 '96년도에 추진할 연구과제 및 세미나, 용역연구등 특수사업계획을 망라하는 '96사업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이다.

'96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적정 경찰인력 산출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등 21개로서 앞으로 6-10개월간 경찰연구관과 연구위원등이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이론과 실무가 접목된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수사업으로는 시사성있는 주제에 대한 보다 밀도있는 연구와 연구결과의 공개발표를 위한 치안정책학술세미나를 6월과 10월에 각각 개최할 예정이며, 학계인사등에 폭넓은 연구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다양한 치안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치안정책용역연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소의 연구결과와 치안관련 각종 자료를 치안논총,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 등으로 발간하여 각급 도서관,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적실성을 보장하기위하여 수시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96연구지도위원 및 연구위원등 위촉

연구소는 지난 2월 서울대 최송화 부총장 등 학계인사 11명을 연구지도위원으로 선정하여 3월 1일자로 위촉하였다. 이들 연구지도위원들은 연말까지 담당 연구실의 과제연구에 참여하고 연구소 사업전반에 관하여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96년도 과제연구를 담당할 연구위원 36명과 연구원 11명을 각 과제별로 선정하여 위촉하였는 바, 앞으로 6내지 10개월간의 위촉기간동안 경찰연구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 연찬회 개최

'96년도 사업추진방향과 연구소의 향후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토의하고자 연구지도위원을 포함한 연구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7일 양평 프라자 리조텔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찬회는 주제별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1부에서 '96년도 연구과제 및 특수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경찰의 미래와 치

안연구소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경찰대학 이상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래사회에 경찰현상을 바르게 이해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중요하며, 치안연구소는 경찰의 정체성과 존립정당성을 제공하는 필수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연구소가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법인체 기관화, 연구진의 연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심리적 일체성의 확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문헌정보의 체계적 확보와 관리, 연구소의 사업계획을 통하여 치안정책 및 행정의 프로그램화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96 치안정책용역연구 희망자 공모

치안분야에 관한 연구희망자를 공모하여 치안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실시하는 치안정책용역연구 사업은 올해로써 그 세번째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연구소 지정과제와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국내 각 대학 및 연구기관 단체·학계인사 등을 대상으로 연구희망자를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 총 43개 과제 62건의 연구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95년도의 39건에 비하여 60% 증가한 것으로, '94년 첫회 실시 이후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치안분야에 관한 연구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연구신청서는 연구지도위원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 연구실적, 전문성등 다방면의 여러 항목에 관하여 4단계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하게되며, 5월 말경 연구소지정 6개과제당 각 1건, 자유과제 6건 등 총 12건의 연구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연구소는 오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제4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주제는 '시민을 위한 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현대화', 제2주제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Police Line 도입방안'으로서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연구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표지 안내 참조)

치안 시책 동향

□ 해커수사대 발족

정보화시대 병리현상의 하나로 범죄해커에 의한 국가주요기밀 누출, 첨단산업정보의 유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95년 10월, 외사3과에 10명으로 구성된 해커수사대를 발족시켰다.

발족 7개월만에 인터폴을 통해 수사 의뢰된 원자력연구소 사건 등을 비롯한 국제 해킹 3건을 공조수사하고, 자체 인지하여 수사한 방산업체인 대우조선 전산망 침투사건 및 일본 NTT 교육망 침투사건 등 국내인터넷 해킹 3건 등을 수사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앞으로 본청 해커수사대에 해커수사용 인터넷 중앙센타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전담반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경찰종합정보체제 사업추진

전산통신관리관실에서는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올해 73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본청, 서울청, 서울방배서와 강남면허시험장을 대상으로하여 중형급 전산기 각 2대씩과 PC 총 355대를 설치하여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하고 있다. 그 대상업무는

전자결재 등 문서관리전산화, 사건수사전산화, 영상처리 가능한 경찰인사자료 종합전산화, 범죄통계의 도형화, 경찰관련 언론자료 전산화 등으로 10월말까지 추진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파출소자율순찰제도 시행 1주년 분석 및 향후대책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난 '95. 3. 15부터 1년간 시행된 담당구역자율순찰제는 시행 경과 외근경찰활동과 접점근무의 활성화로 외근 근무역량이 강화되어 전년대비 5대 범죄 발생율은 2.37% 감소한 데 반하여, 외근경찰관 검거율은 2.1%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책임있고 지역방법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원거리와 고지대, 심야 시간과 악천후시의 순찰결락사례, 담당구역 운용의 불합리, 임무부여 방식과 일부 형식적인 감독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책임있고 효과적인 방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취약지역의 방법심방 실시와 방법순찰카드 활용, 임무부여 방식의 개선, 담당구역 지정운용의 지방관서장예의 위임 등 근무여건의 개

선보완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순찰 근무자들의 자율적이고 생동감있는 순찰활동으로 더욱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임시운전면허 증명제도 개선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구면허증에 적성검사 신청사실만을 기재하고 사용하다가 신면허증 교부시에 구면허증을 회수하는 새로운

임시운전증명제도를 '96. 1.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적성검사 신청시 구면허증을 회수하여 2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적성검사 대상자의 증가로('95년 : 233만명) 발급에 따른 인력 및 시간 낭비가 많고 임시운전증명서의 위조 변조 및 훼손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운 임시운전증명제도의 시행으로 인력 낭비를 줄이고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동향

□ **전당포영업법중 개정법률**
1995.12.30(관보 제13,202호)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대인적 허가요건을 완화하였고(법 제3조 제1항),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였으며(법 제35조),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다.(법 제31조 내지 제34조).

□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
1995.12.30(관보 제13,202호)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였고(법 제2조 제1호 다목), 허가권한을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하였고(법 제6조 제1항), 용역경비업체의 임 직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부정사용 금지의무(법 제6조 제4항)와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제도(법 제6조의 2 내지 제6조의 5)를 신설하였다.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중 개정법률**
1995. 12. 06(관보 제13,182호)

국민불편 해소나 위험성에 따른 총포류 관리의 합리화 목적에서 총포를 재정의하여 가스발사총을 총포의 범위에 포함시켰고(법 제2조 제1항), 총포등과 유사한 살상력이 있고 공안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석궁에 대하여 전자총격기와 같은 수준으로 제조 판매 수출입 소지 취급 등을 규제하고(법 제2조 제6항, 제4조,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제19조), 법인이 건설 경비등 목적으로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전자총격기 소지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장 소재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직원에게 소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가스발사총에 대한 허가는 이를 소지할 소속 직원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며(법 제12조 제2항),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의 제조업 및 수출입허가권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하고, 각 총포류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법 제4조, 제9조 및 제17조)함과 동시에 일본식 용어를 고치고, 벌금형 및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다.

□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중 개정법률
1995.12.6(관보제13,182호)

인명에 위해를 미치는 석궁에 대한 규제를 위해 석궁을 사용하여 화살을 발사하는 것도 사격으로 보도록 하고(법 제2조 제1호), 청문을 사격장설치허가를 취소의 요건으로 명문화 하였으며(법 제18의 2),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중지 명령에 대한 위반등 공공

의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석궁사격장의 종류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종합사격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청문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1996. 3. 7 관보 제13,255호)

● 치안상식



□ Police line

Police line이란 警察本然의 機能인 公共의 安寧, 秩序保護 및 維持, 즉 多衆集會時 軍중통제, 범죄 및 교통사고 現場保存, 災難 地域의 시민보호를 위한 遮斷裝置로써 一名 [警察統制線] 또는 [公共秩序保護線]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Police line을 경찰직무집행의 주요수단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直接的 根據 및 處罰法規는 없으며 各州마다 刑法上 法執行妨害罪 또는 秩序違反罪에 依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警察官職務執行法上 [危險發生防止]條項이나 道路交通法上 [交通上 危險防止]條項 등에 根據를 두고 Police line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 法條項이 Police line의 運用을 목적으로 立法된 것이 아닌만큼 폴리스라인 침범행위에 대한 制裁 規定을 마련할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

□ Community policing

Community oriented policing(地域社會 指向的 警察活動)의 略語로서 1980年代 初부터 미국에서 지역사회 지향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사회의 근본문제를 개선해 가면서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려는 警察 行政을 말한다.

즉, Community policing은 시민들과의 적절한 상호교류 및 협조, 제도화된 감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통해 市民과의 關係를 再定立하는 한편 경찰조직내 상하계급간의 關係를 획일적인 지시, 감독체제가 아닌 相互 協助, 補完的인 關係로 再定立하려는 것으로서 경찰관 개개인에게 그에 相應하는 權限을 委任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代案을 講究하는 分權化된 警察 活動이며

특히 犯罪多發地域의 순찰강화, 정보수집, 피해자상담, 봉사활동, 유관기관과의 관계 강화, 시민교육, 긴급출동체계의 구축, 일반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地域社會의 當面課題를 담당경찰관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하는 對面的 警察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 Miranda原則

警察이나 檢察 등의 搜查機關이 拘束된 被疑者, 被告人의 防禦權 즉 辯護人選任, 陳述拒否權 등을 告知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등으로 부터 얻은 自白은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에 依하지 않은 것이므로 證據能力을 認定받지 못한다는 刑事訴訟上 人身拘束 節次를 말한다.

1966년 美聯邦大法院은 경찰이 性暴行被疑者 Miranda에게 체포 당시 陳述拒否權과 辯護人選任權 등 憲法上 規定된 正當한 權利를 告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성폭행사실을 자백했음에도 證據能力을 否定, 無罪釋放한데서 由來된 原則으로 現行 刑事訴訟法은 現行犯의 逮捕 또는 緊急拘束 등의 경우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規定함으로써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防禦權을 충분히 保障하고 있다.

□ 令狀實質審査制度

搜查機關의 人身拘束의 慎重을 圖謀하기 위하여 檢事가 청구한 구속영장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判事가 피의자를 直接 對面하여 審問한 후 令狀 發付與否를 決定하는 制度로서 拘束前被疑者審問制度라고도 하며 97年 1月부터 施行된다. (改定刑事訴訟法 第201條) 令狀實質審査制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는데

- 체포된 피의자(피의자 체포, 現행범 체포, 긴급체포)는 拘束事由를 判斷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 구속영장청구 즉시 판사가 검사에게 審問期間을 通知하면 검사가 引致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直接 審問後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며
-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피의자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 拘束事由를 判斷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가 被疑者의 拘引을 爲한 拘引令狀을 發付하여 被疑者의 身柄을 確保,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令狀實質審査制는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人身拘束의 慎重과 適正을 期하려는 制度이다.

□ 逮捕令狀

被疑者が罪を犯하였다고疑心할 만한相當한理由가 있고 正當한理由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應하지 아니할 憂慮가 있는 경우 事前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被疑者を逮捕할 수 있도록 發付하는 令狀을 말하며 피의자 체포후 48시간 以內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않을 경우 即時 釋放하여야 한다.

現行 刑事訴訟法은 被疑者の 引致方法으로 嚴格한 拘束事由를 要件으로하는 現行犯逮捕, 緊急拘束, 令狀에 依한 拘束만을 認定함으로써 拘束要件을 具備하지 못한 犯罪嫌疑의 ‘相當性’만이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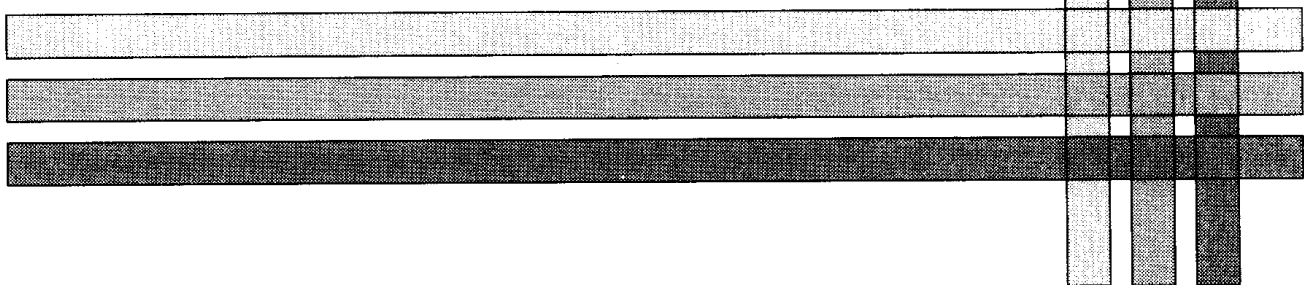
행과 보호유치 등의 身柄確保 方法이 搜查慣行上 行해짐으로써 人權侵害의 素地가 있었음을 勘案하여 이를 改善하기 위하여 導入된 制度임.

逮捕令狀制는 피의자를 調査하여야만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구속할 필요는 없으나 事件搜查를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調査가 필요한 경우 被疑者の 身柄을 確保할 수 있는 適法節次를 마련했다는데 意義가 있으며 97年1月부터 改定된 刑事訴訟法에 따라 施行된다.

한편 逮捕令狀에 의한 구속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拘束期間에 算入되며 逮捕適否審도 認定된다.

현 장 제 언

프라이드를 가진 PRO가 되자
어느 청년학도의 경찰 탐방기



프라이드(PRIDE)를 가진 프로(PRO)가 되자

경위 이 준 형

(방배경찰서 남성과출소장)

21세기 치안의 주역이 되겠다는 거창한 사명감으로 일선에 배치된지도 어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형사과, 경무과, 방범과 등 여러부서를 거치며 경찰의 업무를 몸으로 느끼면서 경찰에 입문할 때의 그 벅찬 감정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다. 교육생 시절의 그 막연한 기대감이나 두려움은 현실로 다가왔고 주위의 시선이 그리 반갑지 않은 않았다는 것에 다소 당황하기도 했다. 특히, 일선 파출소장으로서 보낸 시간들은 많은 보람과 희망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자괴와 실망의 나날이기도 했다.

열악한 근무여건, 직원들의 불평불만, 부드럽지만은 않은 주위의 시선 등은 정열과 의욕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으며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원론적인 회의를 하면서 모든일이 그렇듯이 우리의 적은 외부가 아닌 우리자신에게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는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한지역의 치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보다는 아무런 목적 의식없이 하루를 보내는 직원들을 보며 안타까와 하기도 했다.

문득 일본에 연수갔을때의 일본경찰과 우리의 모습이 비교되었다. 거리에서나 사무실에서나 항상 웃는 얼굴, 자신감에 찬 그들의 모습은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기조차했다. 경찰의 업무자체가 비슷한 처지에 어찌면 이토록 차이가 날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환하게 만들고 반대로 우리를 찡그리게 만들까? 단순히 외부적 여건이 우리보다 좋아서일까?

그들의 그 당당함, 자신감을 아직도 나는 잊지 못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습관적으로 타성에 길들여진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면서 겪어야 하는 저항감과 황당

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누구 앞에서 자신있게 경찰이라는 우리의 직업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적 현실과 분위기는 나를 더욱 위축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보다 더 막중하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 그 어느 직업보다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자신있게 보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살을 부딪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경찰의 업무인데 어찌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겠느냐는 아무런 생각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주민들의 태도에 심한 자괴심을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물론 과거의 왜곡된 역사 탓으로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선택한 직업인 이상 우리에게 대한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주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열악한 근무여건이나 근무조건 비합리적이고 타성에 젖은 근무관행 등은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울러 근무능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좋든 싫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외부적 근무여건이나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라기 보다는 우리자신의 자기 개혁을 통한 자신감과 자부심 회복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전한다는 세상 그 어느 직업보다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물론 일부 동료 경찰관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전체경찰관의 모습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를 기죽게 만들지만 묵묵히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가 대부분인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것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직업에 프로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십니까"라는 선전문구가 한때 유행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경쟁상대없이 자기 발전에 게을리 한다면 우리 개인 나아가서 우리조직은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위치까지 보전하기 힘들 것이다. 현대 사회는 삭막한 경쟁사회이다.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생존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그리 낯설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가. 치안공공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쟁의식없이 그저 과거의 관행따위나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는 안일하고 등한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판단은 냉철하다. 국민들의 서비스욕구 수준에 미달하면 여지없이 우리 곁에서 멀어질 것이며 다른 욕구충족 대상자를 모색할 것이다.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자신들을 갈고 다듬는데 모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

족할 수 있도록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요소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무리 제도나 여건이 훌륭해도 구성원들

의 의식행태가 발전적이지 못하면 그 조직의 장래는 뻔하다. 더 이상 근무여건이나 외부적 환경에 대한 불평불만은 우리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 우리주위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는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

외부에서 이루어주길 바라면서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자율성을 상실한채 외부에 이끌려 다니는 추종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자율성이 필요한가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선 과출소에서 과거의 순찰함에 의한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정선순찰을 지양하고 순찰함이 없는 자율적인 순찰이 시행된 것은 단순히 순찰제도의 개선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가 맡은 구역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외부적 근무여건이나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라기 보다는 **우리자신의 자기 개혁을 통한 자신감과 자부심 회복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수 있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전한다는 세상 그 어느 직업보다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담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발로가 바로 자율순찰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문턱에 서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를 단순히 법집행자로서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문제 해결자 나아가서 지역의 갈등해결자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사랑과 신뢰를 받는 항상 친구같은 경찰로 주민곁에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모든 경찰관들에게 말하고 싶다.

경찰관들이여! 프라이드를 가진 프로가 되자!

어느 청년학도의 경찰 탐방기

본고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과정 법률문장론 강의의 과제를 보고서로 정모 학생외 2명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L모 형사를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것이다. 일선 경찰과 국민의 목소리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 중요부분만 발췌, 수록 하였다.

○ 최근에 '경찰청 사람들'처럼 경찰의 이야기를 실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이 나왔으니... 언론에서 앞장서서 경찰의 이미지를 좋게 바꾸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거든요. 미군범죄를 예로 들어봅시다. 미군속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은 소파협정에 따라 미헌병들에게 신병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협정에 따라 피의

자를 미군에 인도하면, 국민들은 소파협정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법대로 하는 경찰들을 맹비난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언론은 국민여론만 의식하고 시청률이니, 판매부수만 고려해서 경찰을 연일 성토합니다.

○ 경찰생활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애로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솔직히 말해서 경제력만 뒷받침되면 경찰이 참 멋진 직업이에요. 나도 사업도 해보고 교사도 해 봤지만 경찰만큼 멋진 직업이 없더라구요. 자식 같은 학생들에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경찰이 내 재산 좀 넉넉하고 남한테 대포 한잔 살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좋은 직업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경찰월급이 좋아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직업선호도 조사를 하면 항상 밑바닥이에요. 그게 보수가 적어서 그래요. 일례로 경찰관들이 일요일 하루 종일 일하면 초과수당으로 5,000원을 주는 데 반해 교보문고에서 일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거기서는 50,000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연대 송자 총장이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사람 말이 일본은 경찰 월급이 대학교수의 대여섯 배는 된다고 하더군요. 월급을 많이 줘야 인재가 모이는데 이래서야 경찰에 인재가 들어오겠어요?

이런 경제적인 면 말고도 다른 애로점이 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조금만 폭력을 써도 그게 독직폭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면서 경찰관을 괴롭혀서 결국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복지부동하게 만들지요.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로드니 킹' 사건이 문제가 됐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언론에 노출이 돼서 물의가 된 것 뿐이지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고로 거기서는 경찰관한테 꼼짝 못하죠. 그걸 실제로 본게 미8군 헌병들이 이태원에서 미군들이 술을 먹고 주정하면 사정없이 때리고 완전히 넘어뜨려서 뒤로 수갑을 채우더군요. 그런데 한국경찰은 그렇게 제지하면 고소 당해서 징계먹거나 옷벗어야 해요. 우리는 3년 이상의 형만 수갑을 채울 수 있어요. 만약 길거리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경찰 욕하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진짜 강도를 덮쳤을 때도 시민이 발 한 번 걸어 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수갑채우다 찰과상이라도 입으면 나는 옷 벗어야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시위 진압할 때 핫라인을 그어 놓고 그걸 넘으면 사정없이 곤봉으로 가격을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하면 다 구속 될 거예요. 수사하다 보면 감정적인 차원에서 경찰관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하는 놈들은 수사관이 제압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은 가볍게 한 대 때리는데, 그게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하게 되죠.

○ 경찰관이 갖춰야 할 자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또 끝으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경찰의 일원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 경찰의 근무조건이나 수사장비를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경찰은 무엇보다도 생각의 주체가 되어 합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판단과 행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일제시대 순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현재의 경찰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죠.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서 경찰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서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경찰의 공적도 인정해 주고 칭찬도 해주는 언론의 자세가 필요해요. 경찰이 시민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공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가 정말 섭섭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시를 통과해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어도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이번 인터뷰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경찰의 의식상태를 심도있게 파악해 볼 수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경찰과 일반국민과의 의식상의 괴리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L형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한 불만에 가득차 있었다. 그의 주된 불만은 적은 보수와 수사상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도중 약간을 폭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경찰 내부의 공통된 사고방식과 일반시민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일반국민과 경찰의 이렇게 큰 의식적, 실질적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은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칭찬할 일이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경찰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내부의 생각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에도 힘써서 경찰과 국민의 생각의 공유점을 넓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들자면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복지부동하는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면담에서 알아낸 이유를 일반국

민들도 알 수 있다면 국민과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비협조 또한 공동의 이해가 넓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성과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법치주의의 정착실태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경찰 입장에서 이야기였

지만 법대로 한 경찰에 대해 감정에 입각해서 국민과 언론이 비난했다면, 그들은 법치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따라서 설사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폭력을 쓰는 등의 불법적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을 반박할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법치적 사고가 국민과 경찰 양측에 모두 존재해왔었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그토록 혼란스러웠다고 느꼈다.

치안연구소 연구자료 안내

<p>95-01 외사경찰의 국제화 전략</p> <p>95-02 운전면허 관리제도 개선</p> <p>95-03 교통경찰 행정의 발전방향</p> <p>95-04 교통사고처리의 신뢰성 제고방안</p> <p>95-05 음주운전사고대책과 처리시스템 확립방안</p> <p>95-06 각계각층의 통일논의에 대한 연구</p> <p>95-07 집단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p> <p>95-08 경찰장비관리운용 실태분석</p> <p>95-09 경찰관 사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p> <p>95-10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협력 강화 방안</p> <p>95-11 자동차보험제도 개선과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p> <p>95-12 우리의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 고찰</p> <p>95-13 경찰에 있어서 위성통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p>	<p>95-14 언어를 통한 경찰이미지 개선방안</p> <p>95-15 교통감시 및 통제를 위한 화상감지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p> <p>95-16 생물학적 증거물 채취KIT개발</p> <p>95-17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 활용방안</p> <p>95-18 경찰관 성과평가 척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p> <p>95-19 경찰작용법에 관한 연구 -경찰강제권에 대한 근거법의 정비를 중심으로-</p>
	<p>〈치안논총 제 11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 임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과출소 방법활동체제 개선방안 • 민간방범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발전 방안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정책평가 • 경찰장비와 인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테러리즘과 그 법적 대응책